

괴산군수 선거공약 관리 지침

[시행 2020.03.20]
(일부개정) 2020.03.20 예규 제20호

관리책임부서명 : 기획팀
관리책임전화번호 : 3011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군수 선거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천 계획의 수립, 추진상황의 점검 등 공약사항의 전반적인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공약사항의 확정 및 관리체계) ① 공약사항의 확정과 관리체계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.

1. 공약사항은 취임 후 30일 이내에 선거공약 자료를 기본으로 군수가 확정한다.
2. 공약사항 추진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지정은 공약 확정 후 30일 이내에 괴산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3. 공약사항 전반에 대한 총괄관리는 기획홍보담당관에서 수행한다.
4. 소관 공약사항에 대한 관리는 담당관·과장·사업소장이 수행하고, 단위사업별 주관팀 및 협조팀을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한다.<개정 2014.10.31. 훈령 제288호>

② 기획홍보담당관은 공약사항에 대하여 임시 코드번호를 부여하여 공약사항을 추진하는 부서(이하 "추진부서"라 한다)에 실천 가능 여부 등 의견(별지 제1호 서식)을 들어야 한다.

③ 추진부서에서는 실천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사항을 착안하여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법률적 검토 (조례 제·개정 포함)
 2. 임기 내 실천 가능 여부
 3.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자원 조달 계획
 4.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 계획으로 추진 가능 여부 등
- ④ 기획홍보담당관은 추진부서의 검토 결과를 종합 조정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최종적인 관리 코드번호를 부여한 공약사항을 추진부서에 시달한다.

제3조(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) ① 추진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와 협의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관 공약사항별로 연도별 자원투자계획을 포함한 실천 계획(별지 제2호서식)을 수립한다.

1. 공약취지와와의 적합성
 2. 사업의 실현 가능성
 3. 정확한 현황분석과 전망예측
- 가. 광범위한 자료, 지식, 경험 등을 활용
- 나. 관련부서, 전문연구기관 및 주민각계의 의견수렴, 상충하는 이해관계의 비교검토 및 조정
4. 국가 및 도 계획과의 연계와 조화
 5.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
 6. 예견되는 문제점 검토 및 대책
 7.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및 신규 투자사업은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
 8. 법제, 조직 및 인력이 필요할 시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

② 기획홍보담당관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사항의 추진을 위한 총괄적인 투자계획과
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한다.

③ 기획홍보담당관은 각 관·과·사업소의 실천계획을 종합조정하고 관계부서와의
협의를 거쳐 실천계획을 확정하여 시달한다.

④ 실천계획 확정 후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실천계획의 수정·변경이 부득이한
경우에는 각 사업별 주관 추진부서장이 협조부서 및 기획홍보담당관과 협의하여
그 사유 및 근거서류를 첨부, 군수에게 보고한 후 변경할 수 있다.

⑤ 추진부서의 장은 확정된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의거 매년 초에 공약사항별로
당해연도 세부시행계획(별지 제3호서식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4조(추진상황 점검) ① 추진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의 추진상황을 매 분기별로
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, 그 추진상황(별지 제4호서식)을 작성하여 매분기
종료 후 10일까지 기획홍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공약사항의 추진상황 분류기준은 각 호와 같다.

1. 완료 : 현시점 공정완료 및 최종 목표수치 달성된 사업

2. 이행 : 연간 반복사업으로 현시점 계획대비 실적 달성된 사업

3. 정상추진 : 단일사업(건설, 도로 등)으로 연차별 공정에 의해 정상 추진되어
완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준공되는 사업

4. 보류(부진) : 여건상 추진시기가 미루어진 사업 및 연차별·분기별 계획대비
실적이 미흡(당해계획대비 60퍼센트 미만의 실적)한 사업

5. 추진불가(중단, 미착수) : 계획, 여건, 법률 등의 변경, 타 사업으로 전환에
의하여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이거나 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한 미착수 사업

③ 기획홍보담당관은 추진부서의 장이 제출한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
부진사업, 문제 사업,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단독 또는 합동으로
현지 확인점검을 하고, 보완대책 수립 등 필요한 조치와 시정을 요구할수 있으며,
시정요구를 받은 부서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5조(공약사항 관리카드 작성) 추진부서의 장은 확정된 이행계획의 효율적인
관리를 위하여 관리카드(별지 제5호서식)를 작성 비치하며, 매 분기마다 추진
실적을 정비하여야 한다.

제6조(추진상황 공개) 기획홍보담당관은 공약추진상황에 대하여 군 홈페이지에
공개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.

부칙<2014.10.31. 훈령 제288호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>

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① 부터 ⑭까지 생략

⑮ 괴산군수 선거공약 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4호 중 "단위사업별주관담당"을 "단위사업별주관팀"으로 "협조담당"을 "협조팀"으로 한다.

·부터·까지 생략

부칙<2020. 3. 20. 훈령 제20호>

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.